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93호
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6월 1일

서울특별시장

1.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: 1개 구역(고덕1지구)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4호

☐ 정비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지정일 (고시번호)
기정	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일대	125,630.6	2010. 12. 2. (서고시2010-441호)
변경	해 제			

☐ 정비계획 변경(해제)

☐ 용도지역·지구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
☐ 토지이용계획 : 폐지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
결정 구분	구 분	명 칭	면적(㎡)	비율(%)	비고
기정	합 계		125,630.6	100.0	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30,047.0	23.9	•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* 사회복지시설은 부지 및 건물포함 • 순부담(인센티브 부여) 산정 제외 면적 : 18,988.1㎡ - 대체조성(무상귀속) 면적 : 12,571.5㎡ *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폐도 면적 50% - 기존 존치공원 : 6,416.6㎡
		도 로	6,360.6	5.1	
		공 원	14,357.4	11.4	
		연결녹지	4,133.6	3.3	
		사회복지시설	5,195.4	4.1	
	택지 (획지)	소 계	95,583.6	76.1	
		공동주택	94,230.9	75.0	
		종교시설	668.8	0.5	
		유 치 원	683.9	0.6	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

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결정 구분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	높이(m) 층수(층)
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예 정 법적상한	
기정	획지1	94,230.9	고덕1동 501 일대	공동주택	30 이하	192.08	249.86	93.2m 이하 평균 18층 이하 (최고 29층)
	획지2	668.8		종교시설	60 이하	200 이하		4층 이하
	획지3	683.9		유 치 원	60 이하	200 이하		4층 이하
	획지4	5,195.4		사회복지시설	60 이하	150 이하		4층 이하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

※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4. 지형도면(해제) : 첨부 도면과 같음

5.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

-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
- 실효일 : 고시일

6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29)와 강동구 주택재건축과(☎ 02-3425-597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

정비구역 해제 도면

- 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
- 위치도(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 일대)



- 정비구역도(해제)

